

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(표준안)」 개정에 따라
 -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며,
 - 여비의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부정수령액과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(안 제4조 [별표]국내여비지급표)
 - 특별시 및 광역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의 지급단가(1박당)를 40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상향 조정
- 나. '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' 근거규정 신설 (안 제5조)
 -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13. 8. 23. ~ 9. 12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별표 1제1호라목”을 “별표 1의 제1호라목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의 기준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,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)제3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”를 “안전행정부장관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해당공무원란”을 “해당 공무원란”으로, ““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”으로”를 “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”으로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내여비 지급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 동 차 (버스)운임	숙박비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 액	정 액	46,000 (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 액	정 액	특별시 및 광역시 50,000원, 그 밖의 지역은 40,000원

- 비 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공무원
여비 규정」 [별표 3]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
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
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
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
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
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
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 군수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<u>별표 1제1호라목</u>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<u>별표의 기준</u>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 ----- <u>별표 1의 제1호라목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----- <u>별표</u>-----.</p> <p><u>제5조(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)</u>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</u></p> <p>2. <u>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.</p>

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

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·2. (생략)

3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4. ~ 6. (생략)

7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와 같은 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[별표 1]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

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안전행정
부장관과 -----
-----.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-----안전
행정부장관 -----

-----안전행정부장관 -----

-----.

8. -----
----- 해당 공무원
란 -----

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
규정”으로, “「공무원보
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
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
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
방계약직공무원 규정”으
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
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
임계약직공무원”, “전문계
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
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
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----- “「지방공무원
보수규정」”으로-----

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(안 제4조 [별표]국내여비지급표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	자치행정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

□ 공무원 여비 규정

제16조(일비·숙박비·식비의 지급)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(日費)·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,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(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)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,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2]

국내 여비 지급표(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	25,000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 (상한액: 특별시 및 광역시 50,000, 그 밖의 지역은 40,000)	20,000

제31조(가산징수 등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여비조례(표준안)

제5조 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.